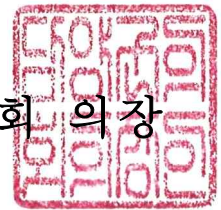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3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주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, 2조)

나. 의정모니터단의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)

다. 의정모니터단의 구성(안 제4조)

라. 의정모니터단의 의견접수 및 처리(안 제5조)

마. 의정모니터단의 해촉(안 제6조)

바. 의정모니터단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3. 10.~3. 16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정모니터단”이란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군민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의장은 모니터링 등에 따라 의정활동의 원활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의회 의정모니터단을 둔다.

② 의정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민의 여론 파악 및 각종 제안
2.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
3. 제도개선이나 군민의 불편사항 수집 및 제출
4. 의회의 회기 중 회의내용 모니터링

제4조(구성) 의정모니터단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중에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단, 특정성별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, 지역별·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모니터단은 의장에게 제3조2항의 각 호와 같이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.

② 모니터단에서 제안한 의견이나 건의는 의회에서 처리한다. 다만,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모니터단 제안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모니터단 제안서 등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6조(해촉)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
2.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
3.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
4.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
5. 그 밖에 의장이 모니터링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

제7조(활동지원)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

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.

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활동결과 조례의 제정, 개폐가 필요한 경우 「담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의정모니터단이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개인정보 보호 등) ① 제5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모니터단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의정모니터단의 회의, 간담회, 그 밖에 의정모니터단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포상)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의정모니터단에 대해서는 「담양군의회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의정모니터단(단원) 제안서

성명		연락처	
의견분류	☐ 입법동향조사 ☐ 정책건의 ☐ 우수사례소개 ☐ 시민불편해소		
제 목			
지역현황			
개선건의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의정모니터단 제안서 등 접수 및 처리대장

[illegible]